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04호
- 나. 제 안 자 : 정진술 의원(찬성자 13명)
- 다. 제안일자 : 2019년 3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3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발굴·반영하는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015년 1월 1일에 경영기획관이 재정기획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나. 2019년 1월 1일에 경제진흥본부가 경제정책실로, 도시교통본부가

도시교통실로, 안전총괄본부가 안전총괄실로, 도시재생본부가 도시재
생실로, 주택건축국은 주택건축본부로, 복지본부는 복지정책실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진흥본부 소관 조례 가운데 경제정책실
또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관된 사항을 고려하여 변동사항을 반영
함(안 제3조~제38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행정기구조례”) 개정(2019.1.1)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37개 조례에서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각각의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서울시는 지난 1월 경제·복지·교통·안전·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과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1급 본부’를 ‘실’로,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하면서 6실 5본부 8국으로 정비한 바 있음.

〈본청 조직 개편 내역〉

(2019. 1. 1 일자)

구분	개편 전		현행	
	직급	1실 9본부 9국	직급	6실 5본부 8국
실	1급 (1)	기획조정실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
본부	1급 (5)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2·3급 (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2·3급 (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국	2·3급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를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관내의 '일자리 정책담당관'을 '경제정책실'로 이관하고,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 기획관'으로 변경하였음.
- 창업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창업과'를 '투자창업과'로 개편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정책과 소상공인정책을 포함한

상생·공정·노동 등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민생 정책관’으로 개편하였음.

-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 정책관’으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외 협력담당관’을 ‘협력상생담당관’으로,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 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였음.
- 이 밖에도 복지분야, 시민건강, 안전분야, 주거복지, 도시안전, 균형 발전분야의 조직 개편과 함께 현안업무 실행력 강화와 업무 통합을 위해 조직 재정비가 이뤄졌음.
- 제정안은 이와 같은 서울시 조직 개편사항을 일괄정비 함으로써 개정 시차 발생에 따른 입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제정안의 사무분장 오류와 수정사항

- 제정안은 기구 명칭변경과 함께 행정기구조례에 미 포함된 ‘보좌 기구’와 ‘과·담당관’ 등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바, 일부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경제진흥

본부장”에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개정하고, 임명직 위원 중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있는 바, “노동민생정책관”이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안 제5조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주관부서인 공정경제담당관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와 안 제35조에서 “경제기획관”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직급과 직책 체계에 맞춰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5조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소관 부서가 도시교통실의 보행정책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안전총괄실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는 도시농업위원회 간사를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에서 “도시농업과장”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변동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 한편, 제정안에 조직 개편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3조의 “공정경제과장”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안전총괄관”은 각각 “공정경제담당관”과 “서울산업진흥원”, “보행친화기획관”으로 수정해야 함.

- 또한, 안 제17조의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준’에서 관리자란과 비고란의 기구 명칭을 각각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반영하고, 안 제32조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제14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안 제32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미 반영된 7개 조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 명칭 변경 미 반영 조례 현황〉

조 번호	조 례	현행	수정안
제39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제40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실장
제41조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본부장	실장
제42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43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44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45조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라. 종합의견

- 일반적으로 일괄 개정은 개정 대상과 취지가 동질적인 경우, 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의 일괄적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 변경 등과 같은 사항은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해야 함.
- 따라서 제정안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비되지 못한 개정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행정효율성, 시민 편의성을 제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다만, 조직개편과 명칭, 소관업무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조직개편 변경사항이 수년 동안 정비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